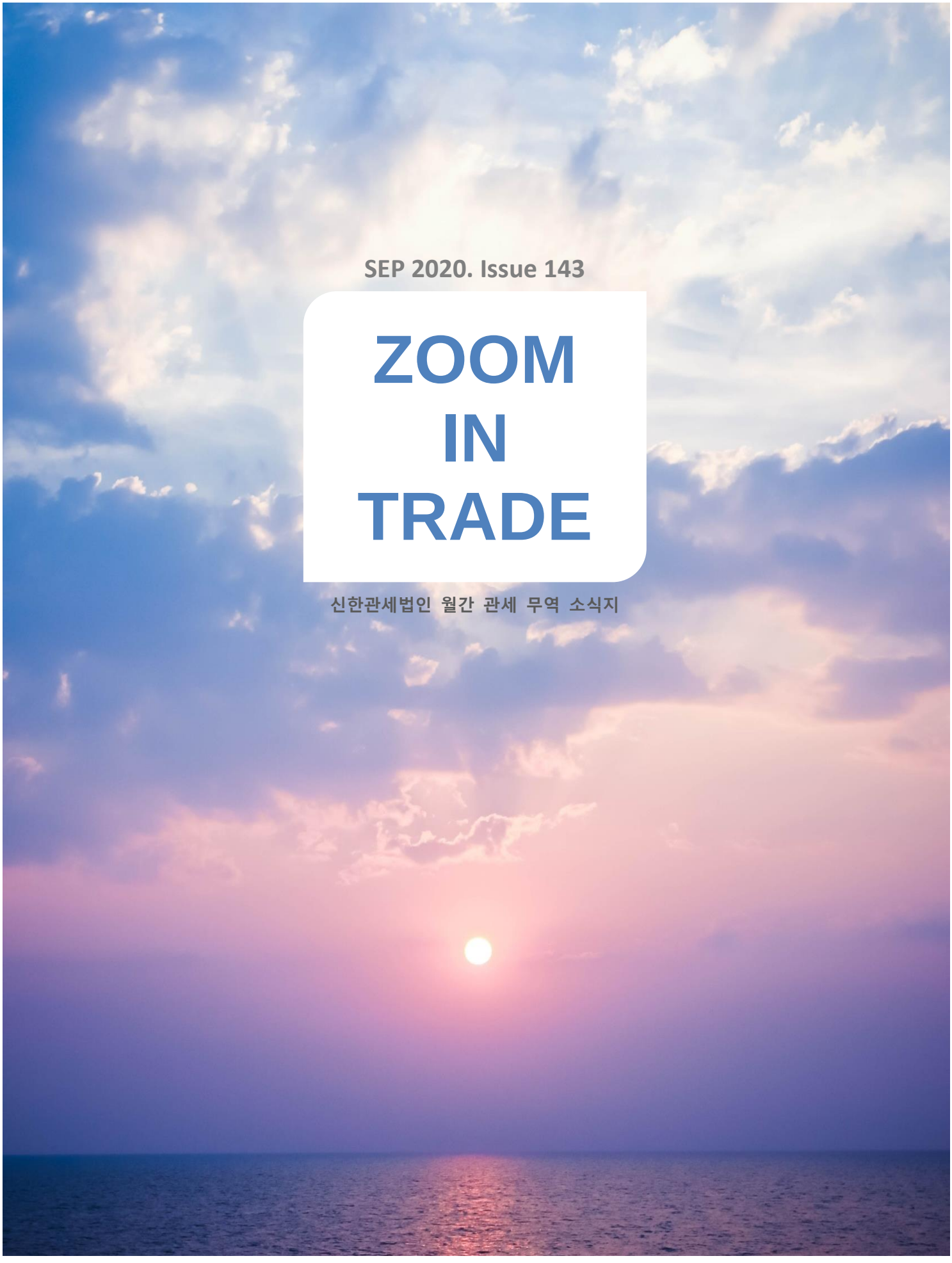

SEP 2020. Issue 143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라떼 추석

Cover Story

05 … 재무개선에 도움이 되는 관세환급 업무 유의사항

Voice From the Field

08 …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활용 안내

Inside Vietnam

11 … 재수출 되는 물품의 관세 환급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

14 …「관세법」일부개정법률

관세 관련 심판사례

17 … 교육용 완구와 비디오 게임기의 품목분류 심판사례

Where Is Grace Chang?

라떼 추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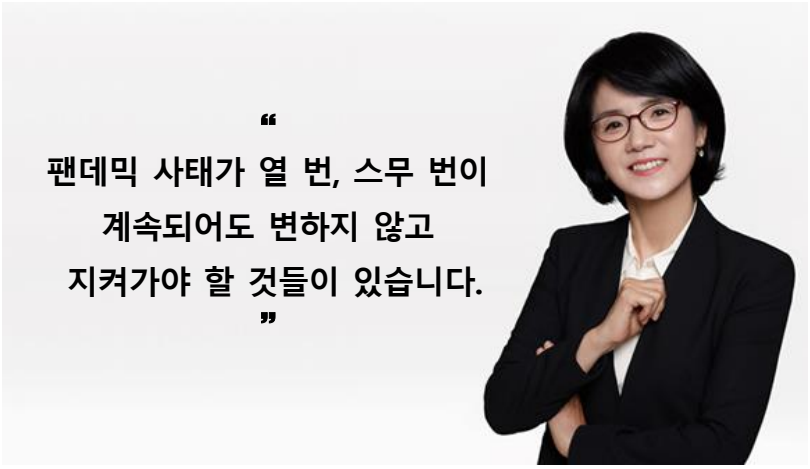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인천공항의 라운지에 매달린 TV 화면에는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질문하고 답변하는 국회의원들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대화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루어 추측컨대 '국방부 시계가 정말 가고 있는지? 다른 시계들과 동일한 속도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한 청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가고 있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것은 지난 겨울 설 명절 즈음입니다. "뭐지? 뭐야??" 하면서 시작된 이 사태는 "몇 주가 지나면 될까? 몇 달이 지나면 끝날까?" 하며 기다리다 벌서 가을이 오고 추석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은 끊임없이 똑딱똑딱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Cover Story 는 '재무개선에 도움이 되는 관세환급 업무 유의사항'입니다. Voice From the Field 는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활용 안내'이며, 베트남 현지에서 알려드리는 Inside Vietnam 은 '재수출 되는 물품의 관세 환급'입니다. 또한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이며, 관세 관련 심판사례는 '교육용 완구와 비디오 게임기의 품목분류 심판사례'입니다.

예전에 추석명절은 최대의 '민족대이동' 행사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이기 위해 동서로 남북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평소보다 2 배 이상 걸리는 이동시간은 민족 대이동의 중지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 고속도로상의 좁은 차 안에서 아이들은 먹고 자야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전에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기차표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서울역 앞에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민족 대이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온 미래

해마다 추석이 오면 전국민의 75%가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이동을 하였습니다. 한 신문사의 9 월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6%만이 이번 연휴 동안의 이동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일가친척이 모여 조상께 감사인사를 드리던 차례를 화상으로 비대면 차례로 진행하라는 권고도 나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라떼' 시절 뿐 아니라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가치들은 Old Normal 이 되고 있습니다. New Normal 의 시대가 덜커덕 전 지구를 덮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생존하는 방법은 역설적이지만 흩어지는 것'*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의 대면은 최소화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예전의 Normal 이었다면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타인 앞에 나올 수 있는 가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예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서 컴퓨터 앞으로 등교하고 출근하는 New Normal 에 따라 기술적인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온 미래에는 아직 많은 Old Normal 과 New Normal 이 뒤섞여 있고 우리는 갈팡질팡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팬데믹 사태가 열 번, 스무 번이 계속되어도 변하지 않고 지켜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추석명절에 각자의 거주지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차례를 지내더라도 조상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은 변하지 않는 Normal 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뿐 아니라 거짓말 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함도 우리 평생에 지켜 나가야 할 Normal 일 것입니다.

똑딱똑딱 시간은 흘러갑니다. 작금의 현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또 미래에 어떤 Pandemic 이 닥쳐올지도 우린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순간 어떤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진실하고 성실하게.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박돈규, [아무튼, 주말], 조선일보 2020.09.05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Cover Story

재무개선에 도움이 되는 관세환급 업무 유의사항

Ⅰ. 들어가며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조, 수출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관세환급"와 관련한 업무상 유의사항 몇 가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관세환급 등의 제도 활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Ⅱ. 중소기업이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라면 간이정액환급제도 활용

- 관세환급에는 원칙적인 환급방식인 "개별환급(실제 수출물품에 물리, 화학적으로 결합된 원재료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 등의 관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관세를 계산하여 환급해주는 방법)" 방법과 "간이정액환급" 방법이 있습니다.

신 종 호 관세사
jhshi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FTA 컨설팅
- 관세환급
- 기업심사

- 실제 관세 납부내역에 대한 증빙과 수출물품에 투입된 원재료 소요량에 대하여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정확한 입증, 관리가 필요한 개별환급의 경우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수출기업이
  -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상시근로자 등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이면서,**
  - ② **실제 제조를 수행(실제 공장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생산한 물품)한 경우**

- 수출사실을 입증을 하면, 수출물품 HS CODE에 따라 일정액의 관세를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하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직접 제조를 하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수출기업과 국내제조사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 중 환급업무 담당자가 없거나 업무가 복잡해서 관세환급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은 간이정액환급방법을 통한 관세환급을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 환급 신청시점에서 과거 2년간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 8월: 2018년 9월 ~ 2020년 8월 수출신고분 환급신청 가능)

Ⅲ. 개별환급 실무에서 누락가능성이 있는 Risk Point

개별환급 실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 유의사항 2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① 환급소요량 등록시 잔량이 부족하거나 당장 매치되는 납세증빙서류가 없는 자재 내역이라 하더라도 소요량에 반영 필요

기업들이 수출물품의 소요량을 등록할 때, 환급신청 당시에 MATCH 되는 수입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해당 자재를 제외하여 투입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s; BOM)를 작성,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관의 조사, 심사로 인한 추징으로 인해 "추가환급"신청을 진행할 때 MATCH 할 수 있는 자재내역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환급이 불가능해 지는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RISK에 대비하여, 지금 당장 환급신청이 가능한 수입이력이 없는 자재라 하더라도 해당 자재를 포함하여 소요량산정 및 환급신청시 등록의 필요가 있습니다.

② 관세환급대상 수출물품이 클레임으로 재수입되는 경우의 처리

관세환급 대상 수출물품을 수출하고 난 후 클레임 등 기타 사유로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환급과 재수입 면세제도 중 어느 한가지 제도만 이용해야 합니다.

➢ 환급을 아직 신청하기 전에 재수입 되는 경우

환급을 아직 받지 않은 수출건의 경우 관세법 제99조 규정상의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관세감면을 받고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당연한 일이지만 최초 수출신고건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 환급 신청 후 재수입 되는 경우

환급을 신청하여 이미 환급액을 지급받았는데 이후에 재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재수입 면세적용을 통해 감면이 예상되는 관세액과 旣 환급 받은 세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이 납부되도록 업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수입 면세 감면을 적용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재수입 면세 적용시 절감 관세액 > 관세환급액)

이 경우 재수입물품 수입신고시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감면을 신청하되, 별도의 란에 기존에 환급 받은 환급액에 대해서 추징(환급관세 납부)이 되도록 기입하여 수입신고 해야 합니다. 만약 관세환급과 재수입 면세 적용을 동시에 진행한 사례가 있다면 잘못된 신고로써 관세환급액에 대해서 자진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Voice From the Field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활용 안내

2020년 7월 1일부터 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본청 및 5개 본부 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Ⅰ.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 관세 부과·징수 또는 관세조사 등 관세행정 집행 과정 등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

□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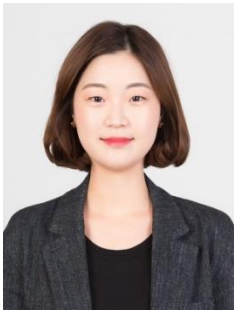

홍 정 화 관세사
jhhong@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품목분류

Ⅱ. 주요내용

□ 관세행정 全영역*을 대상으로 관세조사권 남용 방지,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되, 단, 범칙조사, 외환조사, 외환검사와 내부행정사항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동 제도는 행정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법을 초월한 권리구제는 불가하며,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은 불복제도 우선 이용

-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도 신청가능)까지 처리

□ 신청방법

ㅇ '고충민원신청서' 또는 '권리보호(심의)요청서' 를 작성하여 관할본부세관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하여 신청

□ 처리기한

ㅇ 권리보호요청

- 관세조사관련: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일반행정관련: 72시간 이내

ㅇ 고충민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납세자 권리보호 신청대상

신청유형		내용	신청서류
권리보호요청 (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관세행정 집행 또는 집행이 예정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관세조사 분야**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세관공무원의 행위 등이 대상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에 해당하는 법인심사와 기획심사	권리보호(심의) 요청서
	일반 관세행정 분야	관세조사 분야 이외의 관세행정 분야와 관련하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심의) 요청서
고충민원		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서

□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납세자보호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권리보호 요청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 관세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관세조사팀 교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권한을 행사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Inside Vietnam

재수출 되는 물품의 관세 환급

재수출에 따른 관세 환급

베트남 국내로 수입한 물품을 비관세지역(Non-tariff zone)이나 해외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 상의 두 가지 요건인 "①미사용/미가공, ②재수출시 B13 코드로 신고"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요건인 재수출 신고 코드 B13 과 관련하여 쟁점이 발생하여 관세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박 성 현 관세사
sh.park@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FTA 교육
- 관세환급
- 품목분류

재수출에 따른 관세 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B13 코드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부 세관에서는 이미 폐기된 과거의 지침을 적용하여, 유통목적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B13 코드의 사용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B13 코드로 신고가 가능한 재수출의 범위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이 세관 별로 상이한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베트남으로 수입된 물품을 재수출하고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통관 절차를 포함한 필요 절차 및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한 뒤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세 환급 정책 및 절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관세 정책

해외로부터 베트남 국내로 수입된 물품이 해외 또는 비관세지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다음을 조건으로 하여 납부한 수입관세는 환급되고, 수출관세가 있는 경우 면제됩니다.

- 수입물품이 사용되거나 가공되지 않았을 것
- 재수출시 신고 코드는 B13

※ 관련 규정: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제2조, 제4조 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수출입세법 시행령 No.134/2016/ND-CP 34조, 공식 서신 No. 4557/TCHQ-TXNK

II. 관세 환급 절차

1. 절차

i. 재수출 신고 (신고 코드 B13)
ii. 현품 검사
iii. 관세 환급 서류 구비 및 세관 제출
iv. 관련 서류 확인 후, 세관이 공장 방문 가능
v. 관세 환급 서류 수취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관세 환급 여부 결정 (통상 1주일 소요)

vi. 세관의 환급액 지급 (이 단계는 규정된 기한 없음)

※ 관련 규정: 세무행정법 No.38/2019/QH14 제75조

2. 관세 환급 서류

관세 환급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 신청서 (수출입세법 시행령 No.134/2016/ND-CP 부록7 FORM 9)
- 세금계산서
- 수입 관세 납부 증빙
- 수출입 계약서 및 해당 인보이스
- 최초의 해외 수출자와의 수입물품 반환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관련 규정: 수출입세법 시행령 No. 134/2016 / ND-CP 제34조

※ 본 내용은 베트남 현지 배포 자료를 근거로 신한관세법인이 구성, 재정리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 베트남 소식 관련 상세 문의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베트남관세법인

박은실 법인장: +84-(0)24-7300-8630 [VN], +82-(0)70-5222-7280(KR) / espark@shcs.kr, scv@shcs.kr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이 사: +82-(0)2-3448-1181 [KR] / dkchoi@shcs.kr

박성현 관세사: +82-(0)2-3448-1181 [KR] / sh.park@shcs.kr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이유

수입물품 통관보류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등을 보완하고,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탁송품 통관장소를 일반 보세창고로 확대하고,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관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 나 현 관세사
nhcho@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품목분류

주요 내용

가. 관세 관련 법령 및 조약·협정 등에 따른 원산지검증 요청과 관련하여 회신 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하여 세관장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거래가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해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 이후에도 시정요구 등 미이행 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율이 0% 이거나, 관세가 면제된 물품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 시 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산세를 신설함.

라. 세관장의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마.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품목분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연장(3년 → 심사결과 변경 전까지)함.

바. 여행자 휴대품과 같이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면세한도 등)도 하위법령(기획재정부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사. 현행 관세 심사청구는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고 있으나 관세 불복 절차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변경함.

아. 폐기물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자. 법 위반,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휴대품 유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변질·손상 우려 물품 등에 대해서는 휴대품 예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차. 현재 법률에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관보류 시 화주에게 통지 의무, 화주의 소명자료 제출 등 통관보류의 후속 절차 및 권리구제 사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카.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탁송품 통관장소를 일반 보세창고로 확대하고, 세관장의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해 탁송품 운송업자의 협조사항 등을 명시함.

타.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기존 8%→3%) 함으로써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조절기에 동일한 관세(3%)를 적용함.

관세 관련 심판사례

교육용 완구와 비디오 게임기의 품목분류 심판사례

교육용 완구와 비디오 게임기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그 밖의 완구가 분류되며,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기가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완구와 게임기란 용어는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잦아 그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완구와 비디오 게임기 모두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가운데 게임 기능을 보유하면 전부 비디오 게임기의 제9504호로 분류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아래에서는, 게임기 기능을 일부 수행하더라도 학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물품의 경우 제9503호의 교육용 완구로 분류하도록 결정한 판결을 소개한다.

강 가 람 관세사
grkang@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기업심사
- 품목분류

사실관계 및 쟁점

쟁점물품은 미취학 아동이 한글, 영어, 숫자 등 20여가지의 게임을 하거나 창의력 게임(같은 그림 찾기, 가위바위보 게임) 등을 하고 키보드, 마이크 및 마우스의 입력장치와 비디오 스크린과 스피커를 출력장치로 가지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을 제950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제9504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결정요지

쟁점물품을 제9503호의 완구로 분류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쟁점물품은 게임의 기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 기능이 아동의 '게임'이 아닌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오락'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9503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해설하고 있는"교육용 완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9503호(관세율 8%)에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시사점

상기 판결을 통해 게임 기능을 보유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 오락이 아닌 교육용인 경우 제9504호의 게임기가 아닌 제9503호의 완구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살펴보면, 그 물품의 목적이 오락에 있는지 교육에 있는지 여부와 게임 기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일부 기능에 불과한지 등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완구(제9503호, 8%)와 비디오 게임기(제9504, 0%)호의 품목분류 논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조심2012관098 참고)

www.ftagateway.co.kr
www.customsservice.co.kr

통권 143호 | 발행일 2020년 9월 1일 | 발행인 장승희 | 편집인 최재원
발행처 신한관세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6
Tel 02-3448-1181 Fax 02-540-2323